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건설기계조종사의 부당한 금품 요구·수령
금지 및 위반 시 제재·처벌 》

■ 강승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292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강승규의원 대표발의(제2211292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건설기계조종사의 부당한 금품 요구·수령 금지 및 위반 시 제재·처벌 (안 제27조의2제4항 신설 등)	2

I. 강승규의원 대표발의(제2211292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강승규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7. 4.

다. 회 부 일 : 2025. 7. 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기계조종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음.

현재 건설기계조종사 등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금품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하역을 거부하거나 태업하는 등 공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부당한 금품 요구 행위를 처벌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하므로 제재 처분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건설기계 조종사가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조종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현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제28조 및 제40조).

3. 검토의견

가. 건설기계조종사의 부당 금품 요구·수령 금지 및 위반 시
제재·처벌(안 제27조의2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 ① ~ ③ (생략) <u><신설></u>	제27조의2(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건설기계조종사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조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7. (생략) <u><신설></u>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 ----- ----- ----- ----- ----- -----제7호의2, 제8호----- ----- ----- ----- 1. ~ 7. (현행과 같음) 7의2. 제2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8. 9. (현행과 같음)
8. 9. (생략)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7. (생략)	제41조(벌칙) ----- ----- ----- ----- 1. ~ 17.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신설> 18.·19. (생략)	17의2. 제2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 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한 건설기계조종사 18.·19.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건설기계조종사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등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금품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하역을 거부하거나 태업하는 등 공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사례에 제재 처분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22년 및 2024년 국토교통부의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실태조사¹⁾에서는 금품요구와 관련해서는 타워크레인 월레비²⁾(2022년 58.7%),

1)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실태조사 결과 주요 내용

2022년	① 채용강요(2.8%), ② 장비사용 강요(3.3%), ③ 타워크레인 월레비(58.7%), ④ 전임비 등 강요(27.4%), ⑤ 기타 부당금품 요구(0.8%), ⑥ 태업(1.8%), ⑦ 현장 퇴거불응(0.8%), ⑧ 출입방해(1.2%), ⑨ 임의추가인력 투입(0.8%), ⑩ 레미콘 운송거부 등(2.4%)
2024년	① OT비(초과근무수당) 등 강요(87.7%), ② 채용 강요(10.5%), ③ 부당금품 강요(0.7%), ④ 공사 방해(0.7%), ⑤ T/C 성실 의무 위반(0.4%)

※자료: 국토교통부

초과근무수당 등 강요(2024년 87.7%), 기타 부당금품 요구(2022년 0.8%, 2024년 0.7%)의 행위가, 공사 방해와 관련해서는 레미콘 운송거부 등(2022년 2.4%), 태업(2022년 1.8%), 출입방해(2022년 1.2%), 공사방해(2024년 0.7%)의 행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법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하도급사에게 월레비 등의 부당금품을 요구하는 관행이 꾸준히 발생하고, 이로 인해 건설현장의 안전 및 품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부당금품 등의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 조종과 관련한 부당한 금품 거래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면허 취소 또는 벌금 등과 같은 처벌 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다만, 건설사의 월레비 지급에 대해서는 수십년간 지속된 관행으로,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 성격을 가지게 되었고, 건설사가 공사입찰 시 월레비 등을 견적금액에 반영한 점, 철근콘크리트협의회에서 정한 상한선 등을 볼 때 소송을 제기한 건설사가 원청 및 기사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월레비 지급을 강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³⁾을 감안하여,

2) 타워크레인 월레비란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월급 이외로 주는 비공식적 웃돈을 말함.

3) 광주고등법원, 2023. 2.16. 선고 2021나22465 부당이득금 판결

처벌보다는 건설현장의 근본적인 구조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이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조종과 관련된 부당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위반 시의 제재를 규정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하며, 다음과 같이 처벌과 관련해서는 일부 수정이 필요하고, 면허취소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먼저, 부당금품 요구 및 수령 시 처벌과 관련하여, 부당금품 수수는 쌍방 행위이므로 부당금품을 받은 자와 제공한 자를 함께 처벌하고, 불공정 관행인 부당금품 수수의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를 상향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다음, 부당금품 요구 및 수령 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와 관련하여, 건설기계 조종을 위한 면허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와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로 구분⁵⁾⁶⁾되어 있어,

4) 2024.8.28. 발의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3308호, 임태영의원 대표 발의)”은 건설기계 조종 관련 부당금품 수수에 대한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안하고 있음.

5)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해당 건설기계의 조종에 필요한 면허의 종류에 따라 개정안에 따른 면허취소 규정의 적용에 차이가 있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⁷⁾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①법 제26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덤프트럭
2. 아스팔트살포기
3. 노상안정기
4. 콘크리트믹서트럭
5. 콘크리트펌프
6. 천공기(트럭적재식을 말한다)
7.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설기계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기계

6)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② 시·도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제1종 운전면허
 - 가. 대형면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별표 18과 같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53조 관련)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삭제 <2018. 4. 25.> 5. <u>건설기계</u> 가. <u>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u> 나. <u>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u> 다. <u>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u> 라. <u>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트럭지게차</u> 6. 특수자동차[대형건인차, 소형건인차 및 구난차(이하 "구난차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7. 원동기장치자전거

7) 덤프트럭 등의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에 관한 사항은 「도로교통법」 제93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 제44조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3의2.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4.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5.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 5의2.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
- 5의3.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6.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 경우
8.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9.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10.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10의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제261조(특수폭행)·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
 - 가. 「국가보안법」 중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죄
 - 나. 「형법」 중 다음 어느 하나의 범죄
 - 1) 살인·사체유기 또는 방화
 - 2)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
 - 3) 약취·유인 또는 감금
 - 4)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 5)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 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중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

문 의 처

02)6788-5591

12.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13.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
14. 이 법에 따른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15.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16.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전한 경우
17.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
18.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요청한 경우
- 18의2.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19.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効)시킬 목적으로 시·도경찰청장에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시·도경찰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2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3.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해체·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